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62
----------	-------

발의연월일 : 2025. 8. 28.

발의자 : 윤영석 · 임종득 · 조경태

박대출 · 구자근 · 박덕흠

정동만 · 박성민 · 김태호

곽규택 · 안철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 · 수협 ·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에 대해 일부 세무조정만 반영하여 20억원 이하 9%, 초과분 12%의 특례 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조합법인은 100% 농 · 어업인 등 지역 조합원이 출자한 협동 조합으로 영농 · 어업용 기자재 공급, 농 · 어업 금융, 종자 방류 사업 등 공익사업을 통해 농 · 어업인 등 조합원 지원에 직접 기여하고 있음. 2024년 기준 농 · 업인 지원사업비는 연간 1조 6천억 원에 육박함. 특히, 지방 인구 감소로 금융사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농 · 수협 및 새마을 금고 등은 비수도권 지역 금융점포 3천 개 이상을 유지하며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음. 특히, 도시농협은 8천억 원 수준의 도농상생기금 조성하여 농촌 지역의 경제사업 손실을 보전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고 있음.

또한,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사업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인, 서민 등의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는 조합법인에 대해서도 저율 과세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14년부터 과세대상 금액 20억 원에 대해 9%의 저율과세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저율과세 대상금액을 30억 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율과세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저율 과세대상 금액을 조정하여 농·어업인 등 조합원 지원, 금융포용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려 함(안 제72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를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로, “해당금액이 20억 원”을 “해당금액이 30억 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